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862 호 2004. 9. 20. (월)

선	기 관 의 장
람	

경 상 북 도

■ 고 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현황고시(제2004-245호) 2
-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고시(제2004-246호) 3

■ 공 고

-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방염업)등록공고(제2004-342호) 4
- 공시송달공고(제2004-347호) 5
- 건축허가제한해제공고(제2004-348호) 9
- 문화콘텐츠공모전심사결과발표일정변경공고(제2004-349호) 10
- 전자공인등록공고(제2004-350호) 10

시 군

■ 고 시

- 포항도시계획시설(양학1체육공원)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포항시고시제2004-695호) 26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청도군고시제2004-22호) 28
- 학하지구(가산CC)군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칠곡군고시2004-29호) 31

회								
람								

■ 공 고

- 도시계획(학교)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안동시공고제2004-329호) 35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공고(군위군공고제2004-173호) 36

시 군 소 방 서

■ 공 고

- 소방시설공사사업폐업공고(상주소방서공고제2004-3호) 38

기 타

■ 공 고

- 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249호) 39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4-2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현황 고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전)	등 록 (변 경)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54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3-1	신성철 (김창일)	2004. 9. 14	○ 시민의식개혁, 청소년선도, 기초질서 확립 ○ 중앙 및 도협의회 지침사업 추진	(054) 283-0157	새 마 을 민방위과	변경 등록	
146	새마을운동 중앙회 봉화군지회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94-6	김윤하 (이수성)	2004. 9. 14	○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회원 및 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조정	(054) 672-3522	새 마 을 민방위과	변경 등록	

경상북도 고시 제2004-246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 지방2급하천 대곡천

2. 점 용 자 : 청도군수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 이서면 학산리

나. 면 적 : 374m²

4. 점용목적 및 사업개요

가. 점용목적 : 대곡1교 가설

나. 사업개요 : 교량 L=50.0m, B=9.0m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4-342호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방염업)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 방염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등록내용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및 분야
현대소방 엔지니어링	경북 안동시 당북동 48-54	김연구	제경북-1호	방염처리업 (합판·재류방염처리업)
플러스이엔씨	경북 안동시 태화동 648-102	이순덕	제경북-2호	방염처리업 (합판·재류방염처리업)

2. 등록일자 : 2004. 9. 14

경상북도 공고 제2004-347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문서번호 : 도시계획과-8310

수 신 : 기원건설(주) 안 정 섭

제 목 : 청문출석 통지

1. 건설업등록 폐업으로 불임 청문통지서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귀 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통보하오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내용 : “불임” 청문통지서와 같음

나. 청문일자 : 2004. 10. 11(월) 14:00

다. 청문장소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라. 참 석 자 :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위임장 지참)

마. 지참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

2)기타 이권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귀 사의 사정으로 기한내 청문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임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1호에 의거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청문통지서 각 1부.

2. 의견진술서(서식) 1부.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310

시 행 일 2004. 9. 20

수 신 기원건설(주) 안 정 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2. 당사자	성명(명칭)	기원건설(주) 안정섭(토목030034, 건축030068)			
	주 소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8-2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 ※ 2004. 7. 9 건설공제조합 대구지점으로부터 통보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설업영업정지 6월이하			
5. 법 적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6. 청 문	기관명	경북도청	담당부서명	도시계획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일 시	2004. 10. 11(월) 14:00			
	장 소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도시계획과 지방행정주사		
		성 명	김 종 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053-950-2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상 호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상 호

(전화 :)

직 위

성 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4-348호

건축허가제한 해제 공고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 명 : 건축허가제한 해제

2. 해제사유

경산시 경산·하양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건축허가제한 해제 내용

구 분	면 적	대 상	비 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입안지역	3.03km ² (경산 1.69km ² , 하양 1.34km ²)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규모 이외의 건축물과 5층이상의 건축물 → 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 (7층이하) 입안지역	15개지구 1.89km ² (경산12/1.45km ² , 하양3/0.44km ²)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규모 이외의 건축물과 8층이상의 건축물 → 해제	
제2종(최고고도지구제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입안지역	제2종 : 3.35km ² (경산 2.89km ² , 하양 0.46km ²) 제3종 : 0.97km ² (경산 0.63km ² , 하양 0.34km ²)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규모 이외의 건축물과 16층이상의 건축물 → 해제	

4. 해제일시 : 2004. 9. 20<당초 제한기간 : 2004. 3. 18 ~ 2006. 3. 17(2년간)>

경상북도 공고 제2004-349호

경상북도문화콘텐츠공모전 심사결과 발표일정 변경 공고

제3회 경상북도 게임시나리오공모전, 제2회 경상북도 영화시나리오공모전, 제2회 경상북도 학생영상작품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심사결과 발표

가. 일정변경 : 2004. 9. 30(목) → 2004. 10. 12(화)

나. 변경사유 :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심사일정 촉박

다. 발표방법 : 경상북도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홈페이지 게재 및 당선자 개별 통보

2. 시상식 : 심사결과 발표일에 시상일자 및 장소 동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4-350호

공 고

경상북도공인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공인을 경상북도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전자공인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포항소방학서 덕산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해도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제철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효자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두호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포항소방서 홍해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오천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구룡포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영덕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포항소방서 강구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경주소방서 황오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동부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불국사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보문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용황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경주소방서 안강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외동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감포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주소방서 건천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김천소방서 지좌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김천소방서 미국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김천소방서 공단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김천소방서 지례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법흥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용상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안동소방서 풍산파출소장인		2004. 9.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의성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청송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영양파출소장인		2004. 9.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안동소방서 진보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안동소방서 안계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공단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송정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해평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구미소방서 원평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인동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선산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구미소방서 군위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주소방서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영주소방서 가흥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주소방서 풍기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주소방서 봉화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주소방서 춘양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천소방서장의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영천소방서 성내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천소방서 신녕파출소장인		2004. 9.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영천소방서 금호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상주소방서장의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상주소방서 서성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상주소방서 함창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문경소방서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문경소방서 점촌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문경소방서 문경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문경소방서 예천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문경소방서 가은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산소방서장의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산소방서 조영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산소방서 중앙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산소방서 진량파출소장인		2004. 9.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경산소방서 하양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경산소방서 청도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울진소방서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울진소방서 울진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울진소방서 죽변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울진소방서 후포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울진소방서 온정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성주소방서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신 조 사 유
성주소방서 성주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성주소방서 고령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칠곡소방서 왜관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칠곡소방서 북삼파출소장인		2004. 9. 20	○ 전자문서시스템설치 (2004. 4. 8) ○ 경상북도공인조례 제8조 제2항

시 군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04-695호

고 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양학 1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공원시설관리사업소 및 남·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 9. 20.

포 항 시 장

1. 공원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44	양학1공원	체 육 공 원	포항시 북구 득량지	17,500			경북고시 제2001-288호 (2001. 9. 25)

2.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건축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7,500	100%	1,350	3,168	
시설지 계	8,740	49.9%	1,350	3,168	건폐율 : 7.8%
도 로	1,136	6.5%			
조경시설	87	0.5%			
운동시설	6,418	36.6%	1,322	3,140	국민체육센터
편익시설	1,099	6.3%	28	28	
녹 지	8,760	50.1%			

나.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7,500	1,350	3,168	건폐율7.8%
도 로 시 설			전지역	1,136			
조경시설	1	파고라	219번지	87			
운동시설	소 계			6,418	1,322	3,140	
	2-1	축 구 장	219번지	4,778			
	2-2	국민체육센터	216-1번지	1,640	1,322	3,140	
편익시설	소 계			1,099			
	3-1	주 차 장	217-1번지	1,071			
	3-2	화 장 실	219번지	28	28	28	
녹 지			전지역	8,760			

다. 공원내 도로시설

구분	도 로 종 류			도 로 제 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 계						1,136				
신설	소로	1	1	10	19.0	190	진입로	중로 1-55호선	주 차 장	진입로
신설	"	2	1	8	15.5	124	"	중로 1-55호선	운 동 장	"
신설	"	3	1	4	29.5	118	"	학잠 산13-1임	학잠 220-1전	"
신설	"	3	2	2	352.0	704	시설 연결로	소로 1-1호선	소로 3-1호선	"

3.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게재 생략)

청도군 고시 제200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9. 20.

청 도 군 수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군도 13호	팔조-관하선	매전면 덕산리 261-1	매전면 두곡리 775	0.82	매전면 덕산리 287	도로개설 B:8.0(6.0)m	

2. 사업시행기간 : 2003. 11. ~ 2005. 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청도군청 건설과(☎054-370-6338)

4. 토지세목

가. 소재지 : 매전면 덕산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당초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1	262-1	262-6	답	447	41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09	박재만			
2	263	263-1	답	539	251	"	박재만			
3	264-1	264-7	답	157	69	"	박재만			
4	276-1	276-4	답	1,076	202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68	김용하			
5	287	287-1	과	2,314	706	울산시 남구 무거동 1553	박정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당초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6	289	289-1	답	506	428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09	박재만			
7	295	295-1 295-2	과	456	8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12	김종귀	서울시 중구 다동 33	예금보험공사	가압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경산군지부	근저당권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503 정방원정 [㉠] 가/308	박종팔	"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72-1	김종열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9	강덕조	"
								서울시 중구 다동 33번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근저당권 가처분
8	307	307-1	답	988	464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이기선			
9	308	308-1	답	1,375	689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34	도정배			
10	316	316-1	답	1,445	22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34	도호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경산군지부	
11	317	317-1	답	2,066	819	"	도호기			

칠곡군 고시 제2004-29호

고 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학하지구(가산CC)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변경 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칠곡군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 9. 20.

칠 곡 군 수

1.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 일원
2. 면 적 : $0.425\text{km}^2(424,800\text{m}^2)$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따로붙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도(1/5,000) : 따로붙임(실음생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26,170	감1,370	424,800	100 %	
관리지역	426,170	감1,370	424,800	100 %	

가.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 면 시 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율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경상북도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 일원	관리지역 (구. 준도시지역)	관리지역 (구. 준도시지역)	424,800	100%이하	매입불가토지 제척에 따른 지구경계 조정
		관리지역 (구. 준도시지역)	관리지역 (구. 준농림지역)	1,370	40%이하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시 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학하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일원	-	426,170	02. 7. 16	
변경	1	학하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일원	-	424,800	-	

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하지구	학하리 산100임, 산101임 및 산1194임번지 1,370㎡를 지구에서 제척	매입 불가한 토지의 제척에 따른 지구경계 조정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 일원	426,170	감1,370	424,800	100	

가. 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1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 일원	426,170 ⇒ 424,800 (감1,370)	매입 불가한 토지의 제척에 따른 지구경계 조정

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용 도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426,170	424,800	감)1,370	100	
체육시설용지		145,815	126,419	감)19,396	29.76	
건축시설용지		4,800	3,850	감)950	0.91	
공공시설용지		34,919	42,693	증)7,774	10.05	
녹지 용지	소 계	240,636	251,838	증)11,202	59.28	
	조경녹지	154,976	144,194	감)10,782	33.94	
	원형녹지	85,660	107,644	증)21,984	25.34	

나. 건축계획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	학하리 산100번지 산87-3번지	용 도	클럽하우스, 관리창고동, 그늘집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04-329호

도시계획(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공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4. 9. 20.

안 동 시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충실한 교육환경 개선과 부족한 학생들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당초 시설인 체육관을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변경 신축하고 공공시설입지승인시 결정된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사업 시행지 :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번지외 16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나. 명 칭 : 안동과학대학
4.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 결정면적 : 당초 142,573㎡ → 변경 142,599㎡(증 26㎡)
 - 나. 시행면적 : 9,462.0㎡

다. 규 모

○ 토 공(성토량) : 8,270m³(순성토 4,185m³, 토사반입 4,085m³)

○ 건 축 - 안동국민체육진흥센터

건축연면적 : 6,131.713m²(지하1층 지상3층)

○ 기반시설 : 1식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장춘학원 이사장

6. 사업의 착 및 준공예정일 : 2003. 9. 15 ~ 2005. 12. 31

7. 관계도서 및 기타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함)

8.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과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국·공휴일 제외)

군위군 공고 제2004-173호

공 고

농어촌 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0.

군 위 군 수

1. 사업목적 :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구역 면적 (ha)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시 행 자	비 고
	읍면	리동		사업량 (km)	소요사업비 (천 원)			
화 계	효령	화계 저매	42	1.0	176,820	2004. 9. ~ 2004. 12.	군위군수	
위 성	소보	위성 평호	30	1.0	154,000	2004. 9. ~ 2004. 12.	"	
하 곡	군위	하곡 사직	32	1.0	170,000	2004. 9. ~ 2004. 12.	"	
수 서 (금구)	의흥 군위	수서 금구	92	1.0	188,700	2004. 9. ~ 2004. 12.	"	

3. 사업효과 : 영농의 기계화 및 용수공급 원활로 인한 효율제고, 품질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촌 환경개선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5. 시행계획 열람장소 : 군위군청 건설과 농지 담당(☎054-380-6333)

6. 이의신청 :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군위군수)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

시군소방서

공 고

상주소방서 공고 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 폐업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0.

상 주 소 방 서 장

1. 폐업내용

대상명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업 종
신우전설(주)	상주시 계산동 154-1번지	권 중 원 (370115-×××××××)	제2002-1호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전기분야

2. 폐업일자 : 2004. 9. 13

3. 폐업사유 : 당사 사정으로 인한 자진폐업

기 타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49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구국도)
3. 사용폐지구간 : 경산시 남천면 원리 ~ 경산시 남천면 원리(L=7.89km)
4. 중요경과지 : 경산시 남천면
5. 전용구간 : 경산시 남천면 원리 ~ 경산시 남천면 원리(L=7.89km)
6. 중용구간 : 없음
7. 폐지일시 : 2004. 9. 20
8. 비 고 : 국도4차로 신설로 인해 구국도구간 사용폐지

※ 첨부서류 : 2만5천분의 1지형도(게재생략)

경상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리도에서는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용자 대상업체를 모집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48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등
- 용자금액 : 11억원이내(시설 8, 운전 3), 대출금리(변동 5.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기업노동과(☎053-950-3243)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자금규모 : 30억원
- 용자금액 : 3억원이내, 대출금리(년 3%), 2년거치 3년상환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2795)

■ 유통업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지원규모 : 연간 85억원
- 대상 및 지원한도
 - 시장재개발 · 재건축(40억원), 임시시장 설치(5억원)
 - 공동창고 설치(8억원), 점포시설 개선(1억원)
- 용자조건 : 대출금리(년 5.17%)
- 신청서 접수 :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2793)

■ 중소기업 운전자금

- 대상 : 제조·건설·무역·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운수업 등
- 용자한도액 : 일반업체(3억원내), 우대업체(5억원내)
- 이차보전 : 1년간 3%
- 신청서 접수 :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 위의 자료는 경상북도보(2004. 1. 29자)에 상세히 게재